



# 답변서

사 건 2012재나 495 신분보장받을 권리확인 청구의 소  
 원 고 임그루  
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

## 답변 취지

1.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.
 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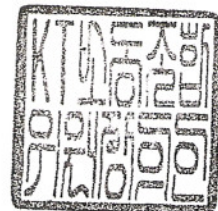
##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

1. 원고가 재심 사유로 들고 있는 청구원인은 모두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
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2. 7. 6

피고 케이티 노동조합

대표자 위원장 정윤모



79252

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귀중